##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191 발의연월일: 2022. 4. 11.

발 의 자:임오경·서영교·이병훈

장철민 · 박상혁 · 이상헌

오영화 • 이정문 • 신동근

박성준 • 유정주 • 최기상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가 장기화되면 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1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·위생 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)	제5조(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	2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,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13.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
	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
	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
	<u>사항</u>
<u>13.</u> (생 략)	<u>14.</u> (현행 제13호와 같음)